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의무시설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 중수도의 운영·관리 주체를 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시기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신고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3)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4)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수도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 1) 중수도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수도 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시 관련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2) 시설 또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자별로 중수도 설치 신고의 시기를 정함(안 제5조제2항)
 - 3) 중수도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4)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5) 발전시설에 대한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을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6) 중수도의 수질검사기관에 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
 - 7)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별표 1 비고2가목 및 나목)
-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접수 및 발급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2. 빗물이용시설 소재지 및 설치장소
3. 빗물 집수 면적 및 빗물 저류조 용량
4. 빗물이용시설의 전부 폐쇄 또는 철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을 각각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를 “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협의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3.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4.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자: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
5.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각 조의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6.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2. 중수도 소재지 및 설치장소
3. 중수처리 용량 및 중수처리 방법
4. 중수도 운영·관리자
5. 중수도의 전부 폐쇄 또는 철거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를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을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승인,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빗물이용시설 [] 설치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시공사	상호(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					지붕면적(㎡)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이용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변경사항(해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 (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은 시설가동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시공사	상호(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시설설계 확인 내용 및 결과			
지붕 집수시설 적정 여부			
초기 빗물 배제 장치 또는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 장치 등 처리시설 적정 여부			
빗물저류조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 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내부를 청소하기 적합한 구조		
처리한 빗물을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배수관, 유량계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적정 여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표시 여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중수도 [] 설치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시공사	상호(대표자)			업종			
	주소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					물 사용량(㎡/일)		
오수발생량(㎡/일)					중수 처리용량(㎡/일)		
중수 이용량(㎡/일)					중수 이용의 주 용도		
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							
중수도의 안전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점·오음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중수도 운영자					중수도 관리자		
변경사항(해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 (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 4.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그 밖에 중수도 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일 경우 수도로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중수도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개발사업의 경우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시·군·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시공사	상호(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소재지 및 설치장소			물 사용량(㎡/일)	
오수발생량(㎡/일)			중수 처리용량(㎡/일)	
중수 이용량(㎡/일)			중수 이용의 주 용도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중수도 운영자			중수도 관리자	
시설설계 확인 내용 및 적합 여부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적정 여부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송수시설(펌프·송 수관 등) 적정 여부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배수관 등) 적정 여부				
수량 부족 대비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 가능 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이 섞이지 않는 구조의 저류조 적정 여부				
처리된 물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장치의 설치 등의 적정 여부				
중수도 배관의 구분 설치 적정 여부				
중수도 사용 안전대책 적정 여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수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 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2. 빗물이용시설 소재지 및 설
치장소

3. 빗물 집수 면적 및 빗물 저류
조 용량

4. 빗물이용시설의 전부 폐쇄
또는 철거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 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3항-----
----- 신고를 하려는 자는 ---

----- 시장
· 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협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2 및 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
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을 신청하기 전

3.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
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
해야 하는 자: 「관광진흥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4.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
는 자: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가를 신청하기 전

5.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러
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자: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각 조의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기 전

<신 설>

<신 설>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6.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
는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
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수리
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2. 중수도 소재지 및 설치장소
3. 중수처리 용량 및 중수처리
방법
4. 중수도 운영·관리자
5. 중수도의 전부 폐쇄 또는 철거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른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제5호-----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6항-----
-----.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6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6항-----

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7. (생략)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생략)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

1. ~ 4. (현행과 같음)

5. -----

----- 시장·군수·구청장
등-----

6.·7. (현행과 같음)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
----- 법 제9조제9항-----

-----.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3. (현행과 같음)

② -----

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9항-----

 -----.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군수·구청장등-----

 -----.

1. 2.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등-----

 -----.